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- 555호

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7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출원인이 포괄위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포괄위임절차의 개선(안 제8조제1항 및 제5항)

- 1) 포괄위임의 효과에 대하여 출원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설명하고 포괄위임등록신청서의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함
- 2)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하는 경우 전자서명 이외에 포괄위임장에 출원인이 서명한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첨부하면 이를 출원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절차 신설

나. 심판관 지정·변경에 관한 통지절차 개선(안 제72조제2항)

심판 관련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관의 지정·변경에 관한 통지를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출원인이 열람가능한 때에 통지한 것으로 봄

다. 전자화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검토행 일몰제 설정(안 제107조제1항)

상표문서 전자화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요건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1인 이상의 책임자를 보유할 것으로 완화하려는 것임

라.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련 제출서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절차 개선(안 제36조제6항)

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요건에 대한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

3. 의견제출

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: 상표심사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>정보마당>법령자료>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

○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(우편번호: 302-701)

전화: (042)481-5377, Fax: (042)472-3468

이메일: hwon88@korea.kr